

비밀유지의무 계약조항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쟁점 - 반도체 제조공정 측정장치 미국회사
와 국내회사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10년 후 계약종료 - 국내대리점의 기술영
업자료 사용행위 NDA 위반 BUT 손해액 입증 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18068 판결



1. 그래프, 도표 등 기술영업 자료의 영업비밀성 불인정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해당 불인정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같은 호 (가)목 내지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유형으로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보충적 일반조항의 지나친 확장해석은 자칫 시장경제의 기본인 경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호대상인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 (가)목 내지 (차)목의 보호가치가 있는 법익에 대한 투자나 노력에 상응하는 정도의 투자나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타인의 성과라고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됨이 원칙이므로, 그 성과 주체인 타인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 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무단 사용만이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제한해석, 보충성 원칙, 해당 불인정](#)

2) 원고 제품의 개념·형상·사용방식

원고 제품이 반도체 웨이퍼 대신 반도체 공정설비에 삽입되어 반도체 제조공정상의 환경 변수들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방식의 웨이퍼형상의 무선 반도체 공정용 측정장치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 제품의 개념·형상·사용방식은 원고가 2007.경부터 국내에서 고객들에게 원고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 제품의 개념·형상·사용방식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원고의 성과라고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피고들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 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제품의 개념·형상·사용방식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이 설정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제품의 개념·형상·사용방식을 사용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3. 판매계약서 Distribu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의무 confidentiality, NDA 조항 위반

행위 인정 BUT 미국회사의 손해발생 입증 부족, 손해배상청구 기각

이 사건 도표 및 그래프가 제2차 대리점계약에 의한 비밀 정보에 해당하고, 피고 B사가 제2차 대리점계약에 따라 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 B사의 거래처인 피고 C사의 영업자료를 이 사건 도표 및 그래프와 내용은 동일하고 일부 색상과 글자체만을 달리한 피고 C사의 도표 및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 C사의 도표 및 그래프가 2018. 초경 피고 C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차 대리점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및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 B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차 대리점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및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도표 및 그래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도표 및 그래프의 수치는 피고들 상품을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가 아니고 그 표시형식도 피고들 상품의 표시형식과 상이하야, 이 사건 도표 및 그래프가 피고들 상품의 영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 B사가 위와 같은 비밀유지 의무 및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18068 판결

국제계약, 영문계약, 계약분쟁, 손해배상, 민형사소송,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